

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999년 7월28일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9년 7월 22일,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9년 7월 27일

다. 상정일자 : 제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'99년 7월27일)상정,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이경식)

가. 제안이유

○ 2차 구조조정에 의한 읍면 업무조정을 위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위임업무 조정 ⇒ 본청이관

- 지방세 100,000원 미만 결손처분(삭제)

- 공유재산임대료 조정 부과징수(삭제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■ 종합검토결과

○ 2차 구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읍면 재무분야 일부직원이 재무과로 흡수(작은면 1명, 큰면 2명만 배치)되게 됨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된 업무를 군으로 이관하려는 것으로서 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첨 부 :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부